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2026.05.28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이용자"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 경우 추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이 "이용자"를 대행해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수신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일체의 서비스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은행"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여 금융자산 조회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허가를 받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서 "은행"이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법』 제30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산을 보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은행의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가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약관-030호(2026.04.06)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고객(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이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동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가 과거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 2. 만 19세 미만의 자가 가입 신청하는 경우
- ③ "은행"은 "가입신청자"의 이용 동의가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이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 ①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은행"에 위임함에 따라 제공되는 대행 서비스로서 "은행"은 위임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의 대출 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확인
 - 2. "이용자"를 대행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 신청
 - 3.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조회 및 이용자 대상 결과 통지
 - 4.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이력 및 처리 결과 조회 서비스 제공
-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에 "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자산의 전송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이용자"가 연동한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합니다.
- ③ 금리인하의 수용 여부 및 인하 폭은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은행"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④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는 경우, 인하된 금리는 해당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별도 약정체결 행위 없이 즉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감독기관 정책 변화 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서비스의 목적·범위 또는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이용)

-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은행”이 정한 위임 서류 양식 제출 및 정보전송·처리에 관한 동의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합니다. 본 위임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및 관련 위임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단, 본 위임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한정되며, “이용자”의 대출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금융거래를 체결하기 위한 위임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의 대출 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확인
 2. 금리인하 요건 충족여부 검토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의 선택
 3. “이용자”를 대행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 신청
 4.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조회 및 “이용자” 대상 결과 통지
- ③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결된 대출계좌를 선택하여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송요구가 철회되어 연결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시에는 “이용자”가 신청 사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부터는 은행이 “이용자”의 금융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마다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한 개인대출 계좌에 대해 “이용자”의 최초 1회 동의로 자동·반복적으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동의 시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 대출계좌의 경우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⑤ “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정보를 전달받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⑥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수용되는 경우 “이용자”와 해당 금융회사간의 별도 약정체결 행위 없이 즉시 인하된 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⑦ “은행”은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 신청 이력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⑧ “이용자”가 이미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 목적의 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경우

동의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직접 철회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제2항에 따라 이용 동의를 한 후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⑨ "이용자"가 "은행"의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동의일로부터 90일간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동의가 철회됩니다.

1. "이용자"가 "은행"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서비스 이용 동의 철회)한 경우
2. 동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 목적의 서비스에 이용 동의를 한 경우
3. "이용자"가 "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 ⑩ 제9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제2항의 수임인 변경이 가능하며, "은행"에 대한 "서비스" 이용 동의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별도로 이용 동의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철회 이전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제공합니다.

- ⑪ 금리인하 신청 후 심사결과 조치가 가능한 시점까지 최대 21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 건은 금융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요구 수용 시 "은행" 및 금융회사 모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지하고 불수용 시 "은행"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지하며, 불수용 시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불수용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⑫ "서비스"를 "이용자"가 철회하기 전 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기 전 금리인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철회 후에도 "은행"이 심사결과를 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지합니다

- ⑬ 위임 철회로 인하여 금리인하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금리인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금리인하요구 결과에 대한 통지)

- ① 금리 인하의 수용 여부, 인하 여부 및 인하 폭 등에 대한 결정은 금융회사의 권한이며,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대행 및 결과 안내만 수행합니다.
- ② "은행"은 금융회사가 통지한 금리인하요구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즉시 "이용자"에게 알림 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않거나 인하 폭이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본 조에 따른 금리인하요구 결과 통지는 금융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 수수료)

- ① "은행"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③ "은행"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약관 제15조를 준용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은행"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한)

- ① "이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연동이 완료된 대출계좌 중 금리인하요구권 대행을 원하는 대출계좌를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집단대출 등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대출계좌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출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대행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가능일 이전에 재신청하는 경우
 2. 동일 계좌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비스" 이용 미동의 또는 타사에 본 "서비스" 이용 동의가 되어있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출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실물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미 해당 대출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직접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경우

3. 금리인하요구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 또는 운영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인 경우
 4.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대출상품인 경우
 5.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서류제출 요청, 심사동의 요청 등에 대해 미응답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또는 "서비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이용자"는 금리인하요구 심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까지 해당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융회사에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이용자"가 "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경우 "은행"은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해지 이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 "은행"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및 변경)

-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이 시범 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또는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
 3.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4. "은행"이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④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및 신용정보원 등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기관의 시스템 점검시간
 2. 서비스 점검, 변경 등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폭동, 전쟁,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관련 법령, 정책변화 등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확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 ⑥ “은행”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내용을 모바일 앱 또는 웹의 공지사항에 미리 게시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은행” 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 14 조 (손실부담과 면책사항)

이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5 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 변경 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준용규정)

- ① "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원큐 앱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약관』,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7 조 (관할법원)

"은행"과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 18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제정)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